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40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제정안의 구성	3
2.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4
3. 식목일 날짜 변경에 관한 검토	10
※ (참고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
※ (참고 2) 개별법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1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3. 20.
3. 회 부 일 : 2026. 3.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들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지거나,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음.

그런데 주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념일 역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경일처럼 정치·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법률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한편, 식목일을 현재의 4월 5일에서 땅이 얼었다 녹아 나무 심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이 되는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기념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식목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기념일 관련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국가기념일 관련 법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기념일은 별표에서 정하되, 국민 의식(意識)을 높이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기념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교육기관이 국가기념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함(안 별표 제6호).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구성

제정안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이 주로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념일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근거를 법률에 두고, 현재 4월 5일인 식목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조 문		주요 내용
본문	제1조	목적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 기념일에 거행되는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국가기념일	53개의 국가기념일을 별표에 규정
	제3조	기념식 및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념일의 의식과 행사를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음.
	제4조	행사의 간소화	모든 국가기념일의 의식과 부수 행사는 검소하게 실시함
	제5조	국가기념일에 대한 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념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음.
부칙	제1조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2.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현행 법체계상 국가의 기념일은 ①「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¹⁾, ② 기념일규정에 따른 정부 주관 기념일, ③ 개별 법률에서 지정하는 기념일로 구분되고 있음.

기념일규정 별표에 포함된 정부 주관 기념일은 57개(2026.7. 기준)이며, 제정안은 이들 대통령령에 따른 기념일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국경일과 같이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제정안과 기념일규정을 비교하면, 목적(제1조), 기념일(제2조), 기념식 및 행사(제3조), 행사의 간소화(제4조) 등 기본 체계와 내용은 상당 부분 유사하나, 기념일 지정 기준(현행 제2조제2항), 미규정 기념행사의 국무회의 보고 절차(현행 제2조제3항), 정부·공공기관의 기념행사 제한(현행 제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현행 제6조) 등 일부 기능은 제정안에 직접 반영되어 있지 않음.

아울러 기념일규정상 기념일이 57개인 것과 달리 제정안 별표에 규정된 국가기념일은 53개이므로,²⁾ 제정안 심사 과정에서는 기념일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규정과의 목록·내용상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제정안과 기념일규정 비교 》

제정안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u>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u>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u>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지정하고</u>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념일) 국가기념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민 의식(意識)을 높이고 활동을 장려하며 자부심·경각심 등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기념일을 정할 수 있다.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제3조(기념식 및 행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념일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또는 지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국가기념일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행사의 간소화) 모든 국가기념일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검소하게 실시하고 해당 국가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제정안에는 ‘순직의무군경의 날’(2023.11.21. 신설), ‘북한이탈주민의 날’(2024.5.21. 신설), ‘세종대왕 나신 날’(2024.11.26. 신설), ‘우주항공의 날’(2024.11.26. 신설)이 누락되어 있고, ‘스포츠의 날(前 체육의날)’,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前 지방자치의 날)’의 명칭 변경이 미반영되어 있음.

제정안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국가기념일에 대한 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이 국가기념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한다.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념일의 행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념행사 및 제5조 단서에 따른 국경일의 기념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국가의 기념일은 국민생활 전반에 일정한 상징적·정책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념일 지정의 기본틀을 법률에 규정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기념일에 관한 정책을 보다 직접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방향은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특히 대통령령과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기념일 규율을 기본법 중심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기념일 제도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임.

다만, 심사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념일은 정책 수요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신설·폐지 및 명칭·주관부처 변경 등이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대통령령을 통한 규율이 정부 정책의 신속성과 탄력성 측면에서 법률에 비해 효율적일 수 있음.

실제로 정부는 2023년 이후 2026년 현재까지 기념일규정을 여러 차례 개정하여 ‘순직의무군경의 날’, ‘북한이탈주민의 날’, ‘세종대왕 나신 날’, ‘우주항공의 날’ 등 새로운 기념일을 신설하고, 일부 기념일의 명칭 및 소관 부처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통하여 기념일 관련 사항을 신속히 조정해 온 바 있음.³⁾

대통령령상 기념일을 법률로 상향할 경우, 향후 기념일의 신설·폐지·날짜·명칭·주관부처 변경 등을 위해서는 법률의 별표를 개정하여야 하므로,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현행보다 제약될 수 있음.

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최근 개정 내역

구 분	시행일	개정사항
제33377호	2023.06.05.	세계 한인의 날 주관부처를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으로 변경
제33382호	2023.06.05.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부처 명칭 변경
제33620호	2023.07.10.	‘체육의 날’을 ‘스포츠의 날’로, ‘지방자치의 날’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변경
제33877호	2023.11.21.	‘순직의무군경의 날’ 신설
제34519호	2024.05.21.	‘북한이탈주민의 날’ 신설
제35010호	2024.11.26.	‘세종대왕 나신 날’, ‘우주항공의 날’ 신설
제35811호	2025.10.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해 소관 부처 명칭 일괄 변경
제35947호	2026.01.02.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부처 명칭 변경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둘째, 제정안이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는 구별되는 일반 국가기념일의 기본법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 국가기념일의 범위와 성격 및 본 법률과 개별 법률·대통령령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 정비가 필요함.

특히 제정안 도입 시 국경일이 아닌 일반 기념일 중 일부가 국가기념일법(제정안)과 개별법에 동시에 규정되는 이중체계를 갖게 되는바,⁴⁾ 국가기념일법과 개별법 간 관계를 정리하는 정의 규정 또는 우선 적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과 개별 법률에 동시 지정된 기념일 현황(10개)

연번	명칭	기념일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별 법률
1	보건의 날	4. 7.	1973년 3월	2014년 1월 (국민건강증진법)
2	장애인의 날	4. 20.	1994년 3월	1989년 12월 (장애인복지법)
3	근로자의 날	5. 1.	1973년 3월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4	어린이 날	5. 5.	1973년 3월	1981년 4월 (아동복지법)
5	어버이 날	5. 8.	1973년 3월	1997년 8월 (노인복지법)
6	노인의 날	10. 2.	1997년 5월	1997년 8월 (노인복지법)
7	세계한인의 날	10. 5.	2007년 5월	2023년 11월 (재외동포기본법)
8	스포츠의 날	10. 15.	1973년 3월	1962년 9월 (국민체육진흥법)
9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1973년 3월	2013년 12월 (문화기본법)
10	농업인의 날	11. 11.	1973년 3월	2011년 11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셋째, 제정안은 국가기념일의 목록과 기념식·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루고 있는 반면, 현행 기념일규정 제2조제2항·제3항, 제5조, 제6조⁵⁾에 규정된 ‘기념일 지정 기준·절차’, ‘정부·공공기관의 기념행사 제한’, ‘기념행사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등에 관한 기능은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기념일 제도 운영상 일부 영역에서 기준이 모호해지거나 입법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기능을 본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참고로, 동 제정안과 동일한 취지·내용의 제정안이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각각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⁶⁾

종합하면, 제정안과 같이 국가기념일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단일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는, ① 기념일 제도 변화에 대한 신속·

5)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한다.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념일의 행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념행사 및 제5조 단서에 따른 국경일의 기념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6) 제20대 국회: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06605호)

제21대 국회: 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9308호)

탄력적 대응 가능성, ② 국가기념일법과 개별 법률·기념일규정 간 관계 정비를 통한 규범체계의 명료성 및 법률 간 중첩 방지, ③ 현행 기념일규정상 기능을 본 법률 및 하위 법령에 적절히 이관·보완하여 입법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기념일을 법률로 규정할 경우 국가기념일 신설, 날짜·명칭·주관부처 변경 등에 대한 절차가 복잡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법률 제정의 실익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식목일 날짜 변경에 관한 검토(별표)

제정안은 현행 기념일규정에 4월 5일로 규정되어 있는 식목일을, 기후변화에 따른 봄철 기상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나무 심기에 보다 적합한 시기로 알려진 3월 20일⁷⁾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식목일은 1946년 미 군정청이 4월 5일을 식목일로 지정하고,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대통령령)을 통하여 4월 5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한 이래, 공휴일 여부의 변동은 있었으나

7) 한국농업신문, “나무 심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2021.03.31.
<https://www.newsfar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965>

현재까지 4월 5일로 유지되어 온 바 있음.⁸⁾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1973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나라 3월 평균기온은 10년마다 약 0.52℃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⁹⁾ 봄철 3월 기온 상승 추세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음.

한편 산림청은 기후·생육 조건과 국민인식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념일로서 식목일은 현행과 같이 현행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¹⁰⁾

해당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목일 날짜 변경에 대하여 국민 일부는 긍정적 의견을 보이는 반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4월 5일의 상징성과 역사성, 기존 인식에 기반한 관행 유지의 필

8) 자료: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보-산림지식)

9) 기상청 보도자료, “2026년 3월 기후특성”, 2026.4.3.

<1973~2025년 월별 전국 평균기온 변화 추세>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추세 (℃/10년)	0.30	0.39	0.52*	0.23	0.25	0.31	0.25	0.27	0.39	0.25	0.34	0.06

* 10년마다 평균기온이 0.52℃ 상승하였음을 나타냄.

10)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628호)에 관한 농해수위 검토보고서에서 발췌

(국민인식조사 주요내용)

-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식목일 날짜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산림청은 '13년과 '21년 식목일 날짜변경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추진('21년은 국민인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기를 달리하여 2차례 조사)하였는데, 찬성의견이 '13년 64%에서 '21년 1차 56%, '21년 2차 57%로 감소하였고, 전국 16개 산림 관련 주요 협회·단체의 구성원 의견 조취 결과('21.12월, 응답 671명), 식목일 유지 53%, 변경 34.6%, 기타(지역별 식목주간 운영 등) 12.4%의 의견으로 나타났음.

* ('13년) 전자설문 및 서면설문을 통해 조사, 2,802명 참여(일반국민, 산림공무원)

** ('21년) 전문 조사기관(한국갤럽)을 통해 조사 2,010명 참여(1차 1,006명, 2차 1,004명)

*** 전국 16개 산림 관련 주요 협회·단체: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사)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한국양묘협회, 한국목재보존협회, (사)한국산림보호협회, 한국수목보호협회,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재)환경조경발전재단,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사)한국산지환경연구회, 한국조경학회, 한국산림문화회, 한국목재공학회

요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시각이 병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행정안전부 또한 식목일 날짜 변경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제정안이 식목일을 기후변화에 부합하는 시기로 조정함으로써 나무심기 및 산림자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려는 취지 자체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구체적인 날짜 변경 여부와 방식은 관계 부처 의견,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38

참고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1	2·28민주운동 기념일	2. 28.	국가보훈부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발전시키는 행사를 한다.
2	납세자의 날	3. 3.	재정경제부	국민의 성실 납세에 감사(感謝)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한다.
3	3·8민주의거 기념일	3. 8.	국가보훈부	3·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발전시키는 행사를 한다.
4	3·15의거 기념일	3. 15.	국가보훈부	3·15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5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산업통상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6	서해수호의 날	3월 넷째 금요일	국가보훈부	서해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한다.
7	4·3희생자 추념일	4. 3.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는 추념 행사를 한다.
8	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국가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9	식목일	4. 5.	농림축산 식품부	나무 심기를 통해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10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사를 한다.
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 11.	국가보훈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12	4·19혁명 기념일	4. 19.	국가보훈부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13	장애인의 날	4. 20.	보건복지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14	과학의 날	4. 2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 추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15	정보통신의 날	4. 2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 신위원회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16	법의 날	4. 25.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17	충무공 이순신 탄 신일	4. 28.	문화체육 관광부	충무공 이순신의 숭고한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다.
18	순직의무군경의 날	4월 넷째 금요일	국가보훈부	국방의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19	근로자의 날	5. 1.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는 행사를 한다.
20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부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는 행사를 한다.
21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부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과 노인 보호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22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 11.	문화체육관광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애국애족정신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23	스승의 날	5. 15.	교육부	교권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스승 공경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24	세종대왕 나신 날	5. 15.	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사상을 계승 · 발전시키는 행사를 한다.
25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5. 18.	국가보훈부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26	부부의 날	5. 21.	성평등가족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행사를 한다.
27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성평등가족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행사를 한다.
28	우주항공의 날	5. 27.	우주항공청	우주경제 시대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주항공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29	바다의 날	5. 31.	해양수산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북돋우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30	의병의 날	6. 1.	행정안전부	의병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31	환경의 날	6. 5.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32	현충일	6. 6.	국가보훈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戰歿將兵)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偉勳)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33	6·10민주항쟁 기념일	6. 10.	행정안전부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34	6·10만세운동 기념일	6. 10.	국가보훈부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35	6·25전쟁일	6. 25.	국가보훈부	6·25전쟁을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36	철도의 날	6. 28.	국토교통부	기간(基幹) 교통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37	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행정 안전부 · 국가 정보원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는 행 사를 한다.
38	북한이탈주민의 날	7. 14.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북한이탈주민 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남북주민 간 통 합문화를 형성하고, 통일인식을 제고하 기 위한 행사를 한다.
39	푸른 하늘의 날	9. 7.	외교부 · 기후 에너지환경부	유엔 기념일인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을 맞이하여 대기질 개선 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대기오염 저감활동에 범국가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40	국군의 날	10. 1.	국방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 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는 행사를 한다.
41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하는 행사를 한다.
42	세계 한인의 날	10. 5.	재외동포청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 적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43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부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 가발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44	스포츠의 날	10. 15.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각종 스포츠 행사 및 대회 개최와 더불어 올림픽의 이상(理想)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45	부마민주항쟁 기 념일	10. 16.	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46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문화체육 관광부	방송 · 잡지 · 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관 련된 행사를 한다.
47	경찰의 날	10. 21.	행정안전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경찰의 사명감 고취와 관련된 행사 를 한다.
48	국제연합일	10. 24.	외교부	국제연합 창립과 6·25전쟁 중 국제연합 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49	교정의 날	10. 28.	법무부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 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의지를 북 돋우는 행사를 한다.
50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의 날	10. 29.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행 사를 한다.
51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 요일	금융위원회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 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 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행사를 한다.
52	학생독립운동 기 념일	11. 3.	교육부 · 국가보훈부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 · 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 키는 행사를 한다.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53	농업인의 날	11. 11.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54	순국선열의 날	11. 17.	국가보훈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 하고, 선열의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55	소비자의 날	12. 3.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하고, 소비자보 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56	무역의 날	12. 5.	산업통상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貿易立國) 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57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 27.	과학기술정보 통신부·기후 에너지환경부 · 원자력안전 위원회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 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 다.
비고 1. 제7호에서 “희생자”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를 말한다. 2. 제57호의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원자력의 날”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고2

개별법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148개) (2025. 12월 기준)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1	해양안전의날	매월 1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법
2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행정안전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3	한국수어의 날	2.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화언어법
4	한국수어 주간	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화언어법
5	문화유산 방재의날	2.10.	국가유산청	문화재보호법
6	희귀질환 극복의 날	2월의 마지막날	보건복지부	희귀질환관리법
7	국립공원의 날	3. 3.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법
8	여성의 날	3. 8.	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9	흙의 날	3.1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어업법
10	의용소방대의 날	3.19.	소방청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	암 예방의 날	3.21.	보건복지부	암관리법
12	결핵 예방의 날	3.24.	질병관리청	결핵예방법
13	수산업인의날	4. 1.	해양수산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14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15	전기의 날	4.10.	산업통상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16	편의증진의 날	4.10.	보건복지부	장애인등편의법
17	도시농업의 날	4.11.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법
18	도서관의 날	4.12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법
19	도서관 주간	4.12부터 1주간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법
20	국민안전의 날	4.16.	행정안전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1	장애인의 날	4.20.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22	장애인 주간	4.20.부터 1주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23	자전거의 날	4.22.	행정안전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24	새마을의 날	4.22.	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25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4.28.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	4.28부터 1주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스포츠 주간	4월 마지막 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기본법
28	청소년의 달	5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기본법
29	가정의 달	5월	성평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30	근로자의 날	5. 1.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31	씨름의 날	음력 5.5.	문화체육관광부	씨름진흥법
32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33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34	유권자의날	5.10.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공직선거법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35	유권자 주간	5.10.부터 1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36	바다식목일	5.10.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37	한부모가족의 날	5.10.	성평등가족부	한부모지원법
38	양잠인의 날	5.10.	농림축산식품부	가농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9	입양의 날	5.11.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40	입양주간	5.11.부터 1주일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41	식품안전주간	5.7.~5.2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기본법
42	식품안전의 날	5.1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기본법
43	가정의 날	5.15.	성평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44	발명의 날	5.19.	특허청	발명진흥법
45	세계인의 날	5.20.	법무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46	세계인주간	5.20.부터 1주간	법무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47	문화다양성의 날	5.2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48	문화다양성 주간	5.21.부터 1주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49	방재의 날	5.25.	행정안전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50	실종아동의 날	5.25.	보건복지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	실종아동주간	5.25.부터 1주간	보건복지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2	의료기기의 날	5.29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53	중소기업주간	5월 셋째 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54	통일교육주간	5월 넷째 주	통일부	통일교육지원법
55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5.25.~5.31.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56	해외파병용사의 날	5.29.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7	환경 교육주간	환경의 날(65)이 포함된 1주간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교육법
58	국악의 날	6. 5.	문화체육관광부	국악진흥법
59	구강보건의 날	6. 9.	보건복지부	구강보건법
60	기록의 날	6. 9.	행정안전부	공공기록물법
61	헌혈자의 날	6.14.	보건복지부	혈액관리법
62	노인학대예방의 날	6.15.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63	해양조사의 날	6.21.	해양수산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64	장애인학대예방의 날	6.22.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65	선원의 날	6월 셋째 주 금요일	해양수산부	선원법
66	전자정부의 날	6.24.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67	마약퇴치의 날	6.26.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68	6.25전쟁 남북자 기억의 날	6.28.	통일부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69	사회적기업의 날	7. 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70	사회적기업 주간	7.1.부터 1주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71	협동조합의날	7월 첫째 토	재정경제부	협동조합기본법
72	협동조합 주간	협동조합의 날 이전1주간	재정경제부	협동조합기본법
73	여성기업주간	7월 첫째 주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74	도농교류의 날	7. 7.	농림축산식품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75	방위산업의 날	7. 8.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6	인구의날	7.11.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77	연안안전의 날	7.18.	해양경찰청	연안사고예방법
78	연안안전점검 주간	7월 셋째 주	해양경찰청	연안사고예방법
79	유엔(UN)군 참전의 날	7.27.	국가보훈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80	섬의 날	8. 8.	행정안전부	섬 발전 촉진법
81	이산가족의 날	추석 전전날 (음력 8월 13일)	통일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82	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 림의 날	8.14.	성평등가족부	위안부피해자법
83	양성평등주간	9.1.~9.7.	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84	양성평등 임금의 날	양성평등주 간 (9.1~9.7.)중 하루	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85	통계의 날	9. 1.	통계청	통계법
86	여권통문의 날	9. 1.	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87	태권도의 날	9. 4.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88	지식재산의 날	9. 4.	국가지식재산위원 회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지식재산기본법
89	고향사랑의 날	9. 4.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
90	사회복지의 날	9. 7.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91	화장품의 날	9. 7.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92	사회복지주간	9.7.부터 1주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93	곤충의 날	9.7.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산업법
94	생명나눔 주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	보건복지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95	숙련기술인의 날	9.9.	고용노동부	숙련기술장려법
96	자살예방의 날	9.10.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97	자살예방 주간	9.10.부터 1주일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98	해양경찰의 날	9.10.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법
99	산업단지의 날	9.14.	산업통상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00	성매매 추방주간	9.19.~9.25.	성평등가족부	성매매피해자보호법
101	연안정화의 날	9월 셋째 토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102	청년의 날	9월 셋째 토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
103	청년주간	청년의날부 터 1주간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
104	치매극복의 날	9.21.	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
105	조달의 날	9.30.	조달청	조달사업법
106	개인정보보호의 날	9.30.	개인정보보호위원 회	개인정보보호법
107	군인가족의 날	9월 넷째 금	국방부	군인복지기본법
108	경로의 달	10월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109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110	동물보호의 날	10. 4.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111	세계 한인의날	10. 5.	재외동포청	재외동포기본법
112	세계한인주간	10.3.~10.9.	재외동포청	재외동포기본법
113	임산부의 날	10.10.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114	정신건강의 날	10.10.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115	정신건강주간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116	여성어업인의날	10.10.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117	스포츠의 날 (前체육의날)	10.15.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기본법
118	여성농업인의 날	10.15.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의2
119	호스피스의 날	10월 둘째 주 토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120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본법
121	회계의 날	10.31.	금융위원회	외부감사법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122	동반성장주간	11월 첫째 주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23	임업인의 날	11. 1.	산림청	임업진흥법
124	손상예방의 날	11. 1.	질병관리청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5	수소의 날	11. 2.	산업통상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6	한글 점자의 날	11. 4.	문화체육관광부	점자법
127	한글 점자 주간	한글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	문화체육관광부	점자법
128	소상공인의 날	11. 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기본법
129	소상공인 주간	소상공인의 날 이전1주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기본법
130	소방의 날	11. 9.	소방청	소방기본법
131	보행자의 날	11.11.	국토교통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132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날	11.11.	국가보훈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133	농업인의 날	11.1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34	약의 날	11.18.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135	아동학대예방의날	11.19.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136	아동학대예방주간	11.19부터 1주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137	김치의 날	11.22.	농림축산식품부	김치산업 진흥법
138	민원의 날	11.24.	행정안전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39	중견기업주간	11월 셋째 주	산업통상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140	가정폭력추방주간	11.25.~12.1.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1	성폭력추방 주간	11.25.~12.1.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법
142	여성폭력추방 주간	11.25.~12.1.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143	자원봉사자의 날	12. 5.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44	자원봉사주간	12.5부터 1주일간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45	국가유산의 날	12. 9.	국가유산청	국가유산기본법
146	기부의날	12월 둘째 월	행정안전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147	기부주간	12월 둘째 주간	행정안전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148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12.23.	해양경찰청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본 자료는 각 기념일의 개별법률 소관부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